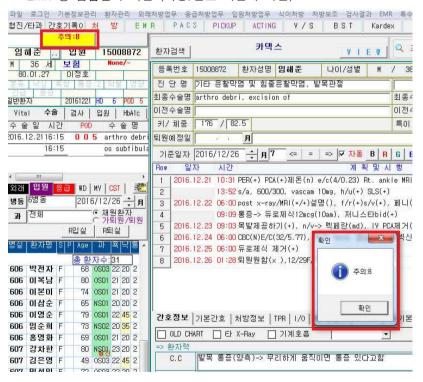
## W-4.2.3 감염성질환 격리 절차

- 직원간 정보공유방법 (공기매개, 비말전파, 접촉전파)
- 1) 병실문앞, 병실안 침상에 격리표시
- 2) 의무기록 환자 관리 클릭하여 감염관리에 내용을 입력한다.
- 3) 감염관리 내용이 입력된 환자는 전산 화면에 팝업창 통하여 감염정보를 인지한다
- 4) 환자인식밴드에 격리 표지를 이용하여 환자 감염정보를 공유한다.
- 5) 검체에 격리표시
- EMR 상 감염환자 확인 (처방/간호 화면에 국한)



• 환자인식밴드용 감염환자 표식 테그(A:공기/B:혈액/C:접촉/D:비말)



- 격리형태 별 보호구 사용 지침
  - ◉반드시 적용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적용

	표준주의	공기주의	비말주의	접촉주의
표준주의	_	•	•	•
1인실	0	•	0	0
손위생	•	•	•	•
장갑	0	0	0	•
가운	0	0	0	•
마스크	0	•	•	0
보안경	0	0	0	0

●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거 순서

1) 착용 : 손위생 ⇒ 가운 ⇒ 마스크 ⇒ 보안경 ⇒ 장갑

2) 탈거 : 장갑  $\Rightarrow$  가운  $\Rightarrow$  손위생  $\Rightarrow$  보안경  $\Rightarrow$  마스크(병실 밖에서 탈거)

⇒ 손위생

● 전파경로별 표준예방지침 [병실문 앞 게시용 ]





● 역격리 지침 [병실문 앞 게시용]



## ● 입원화자 격리절차



## ● 격리병실 사용기준

No.	제목	심사기준			
		● 격리대상			
면역억제		1) ANO가 500/mm 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			
	2) AIDS 황자				
1	(보호격리	● 격리기간			
	)	1) ANO가 3일간 계속하여 500/m㎡ 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			
		소실될 때까지			
		2)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			
2 VRE 양성	● 격리대상 :				
		여러 가지 검체(대변, 항문도말, 회음부, 액와부, 배꼽, 상처,			
	요관, 인공항문 부위 등)에서 실시한 배양검사 또는 POR 검사				
	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				
	● <b>격리기간</b> : 1~2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VRE 배양검사가 3회				
	연속 음성일 때까지				
3 결핵	● 격리대상 :				
	chest X-Ray 상 황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치료경험이 없				
	결핵	는 초치료 환자의 경우. 균이 증명되기 전이라도 격리인정			
		● <b>격리기간</b> : 객담 도말검사상 3회 연속(수일간격)음성으로 나와			
		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			
		● <b>격리대상</b> : 제1군 법정 감염병 확진 혹은 의사 환자			
	● 격리기간				
	제1군	1) 콜레라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:			
4   崔	법정감염	항생제치료 종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대변에서			
	병	그 결과가 2회 이상 음성인 때			
		2)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: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이 지난 후			
		24시간 간격으로 대변에서 그 결과가 3회 음성인 때			
홍역, 수두 5 유행성이 하서염	홍역.	● <b>격리대상</b> : 진료 상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		
	수두	● 격리기간			
		1) 홍역: 발진이 시작된 후 4일까지 격리			
		2) 수두: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까지 격리			
		3) 유행성이하선염: 종창이 사라진 후 3일까지 격리			
	로타바이	• 격리대상 : 임상 진단(Viral Antigen 양성)이 확인된 경우 인정			
6	러스	단, 36개월 이상 연령의 경우 대변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			
	창자염	인정			
7	옴	● <b>격리대상 :</b> 입원이 필요한 타 질환이 병발된 경우 인정			